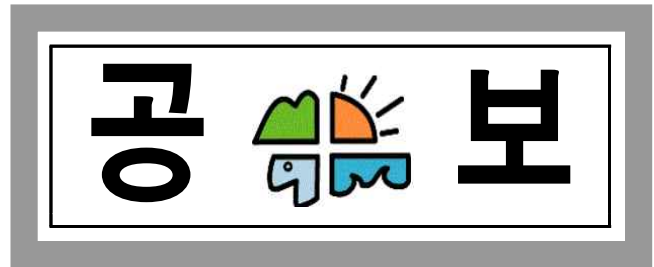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76호 2023년 6월 30일(금)

조 례

-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3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
-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9

훈 령

-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2

예 규

-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16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영랑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7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22
-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26
- 속초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고시 27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9
- 보상계획공고 31

입법예고

-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24호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 조성 사업
2. 아동 놀이 인식개선 교육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한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25호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를 각각 “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를 “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샤 위 장	실내(코인샤워)	1회 / 3분	1,000 ※ 추가 500원 / 1분 30초 이용	
	야외(코인샤워)	1회 / 1분30초	500	
물품보관소	보관용 물품	1일	대 3,000 중 2,000 소 1,000 ※ 당일 24시 경과 시 1일당 동일요금 부과	
썬 베 드		1개 / 1회	10,000	
파 라 솔	일반형	1개 / 1회	10,000	
	대형(가족용)	1개 / 1회	50,000	
튜 브	소형	1개 / 1회	5,000	
	대형		10,000	
구멍조끼	소형	1개 / 1회	5,000	
	대형		10,000	
국민여가 캠 핑 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1차량	성수기	비수기
			45,000	35,000
	샤워장 (코인온수샤워기)	1회 이용	성수기	비수기
			최초 1회 1,000원 3분 이용 ※ 추가 500원 1분 30초 이용	1회 500원 4분 이용

<비 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캠핑장의 성수기 : 여름 피서철(7.1~8.31), 단풍철(10.1~10.30)
 - 캠핑장의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캠핑장 샤워장의 성수기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캠핑장 샤워장의 비수기 : 해수욕장 개장이외의 기간
- 오토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여 유료로 운영하며, 사용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지역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무료 사용토록 한다.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26호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지원
3. 진로·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원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진로·진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27호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반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은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2.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행정·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훈령 제781호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속초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신 :

의안번호 :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이의신청) 요 지		
안건상정 사유		
담당부서 검토의견		
기 타		

속초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부 서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서명 검토자(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서명
시 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우 /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수신 :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심의결정내용		

속초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장

기안자(직위/직급)서명 검토자(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서명
 시 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우 /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

속초시정보공개심의 의결서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

일시/장소				의안번호		
의결안건						
심의내용						
의결내용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비 고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간사 : 문서통신팀장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예규 제623호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을 “속초시 정보공개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령”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영랑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영랑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이를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5월 일

속 초 시 장

-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공원조성계획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	영랑공원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143,484	-	143,484	2015.09.25 (속초시 고시 제2015-43호)	세부조성 계획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영랑공원	• 영랑근린공원의 시설지 일부 변경 -기반시설 14,554㎡ → 15,298㎡(증744㎡) -조경시설 1,714㎡ → 1,556㎡(감158㎡) -휴양시설 8,560㎡ → 7,697㎡(감863㎡) -유희시설 957㎡ → 1,413㎡(증456㎡) -운동시설 1,457㎡ → 1,217.5㎡(감239.5㎡) -교양시설 3,219㎡ → 1,218.0㎡(감2,001㎡) -편익시설 2,273㎡ → 2,112㎡(감161㎡) -관리시설 226㎡ → 258㎡(증32㎡) -녹지및기타 110,524㎡→112,714.5㎡(증2,190.5㎡) • 시설별 도면표시번호 조정	• 기 수립된 조성계획은 산림훼손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곳곳에 있기에, 산림훼손을 저감하고,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산림형 근린공원을 조성하며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영랑근린공원

1) 총괄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근린공원 총계		143,484	-	143,484	100%
공원 시설	소 계	32,960	감2,190.5	30,769.5	21.44%(30.63%)
	기반시설	14,554	증744	15,298	10.66%(15.23%)
	조경시설	1,714	감158	1,556	1.08%(1.55%)
	휴양시설	8,560	감863	7,697	5.36%(7.66%)
	유희시설	957	증456	1,413	0.99%(1.41%)
	운동시설	1,457	감239.5	1,217.5	0.85%(1.21%)
	교양시설	3,219	감2,001	1,218	0.85%(1.21%)
	편익시설	2,273	감161	2,112	1.47%(2.10%)
	관리시설	226	증32	258	0.18%(0.26%)
녹지	녹지 및 기타	110,524(67,479)	증2,190.5	112,714.5(69,669.5)	78.56%(69.37%)
공원시설율(법정40%이하)		30,769.5/143,484(100,439) * 100% = 21.44%(30.63%)			
공원건폐율(법정10%이하)		383.6/143,484(100,439)*100% = 0.27%(0.38%)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	----	---------	---------	----

		표시번호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	-	143,484	-	143,484	201	증)182.6	383.6	
공원시설 소계		-	-	32,960	감)2,190.5	30,769.5	201	증)182.6	383.6	
기반 시설	소 계	-		14,554	증)744	15,298	-	-	-	
	진입광장1	가-1	가-1	951	증)10	961	-	-	-	
	진입광장2	가-2	가-2	176	감)29	147	-	-	-	
	진입광장3	가-3	가-3	229	감)51	178	-	-	-	
	진입광장4	가-4	가-4	1166	감)203	963	-	-	-	
	진입계단	①	-	-	-	-	-	-	-	삭제
	스텐드1	②	-	-	-	-	-	-	-	삭제
	도로	-	-	12,032	증)1,017	13,049	-	-	-	
조경 시설	소계			1,714	감)158	1,556	-	-	-	
	캐스케이드	-	나		증)451	451	-	-	-	
	야생초화원1	나-1	다	890	증)12	902	-	-	-	
	야생초화원2	나-2	-	614	감)614	-	-	-	-	삭제
	벽천	다	라	210	감)7	203	-	-	-	
	아외탁자	③	-	-	-	-	-	-	-	삭제
휴양 시설	소 계			8,560	감)863	7,697	-	-	-	
	잔디광장1	라-1	마-1	758	증)52.5	810.5	-	-	-	
	잔디광장2	라-2	마-2	4,139	감)425	3,714	-	-	-	
	전망쉼터1	마-1	바-1	228	감)62.5	165.5	-	-	-	
	전망쉼터2	마-2	바-2	15	증)7.5	22.5	-	-	-	
	전망쉼터3	마-3	바-3	32	증)2.5	34.5	-	-	-	
	전망쉼터4	마-4	바-4	30	감)1.5	28.5	-	-	-	
	전망쉼터5	마-5	바-5	425	감)265	160	-	-	-	
	전망쉼터6	마-6	바-6	72	감)31.5	40.5	-	-	-	
	전망쉼터7	마-7	바-7	267	감)181	86	-	-	-	
	전망쉼터8	마-8	바-8	64	감)7	57	-	-	-	
	전망쉼터9	마-9	바-9	86	감)39	47	-	-	-	
	휴게쉼터1	바-1	사-1	563	감)300	263	-	-	-	
	휴게쉼터2	바-2	사-2	36	증)578	614	-	-	-	
	휴게쉼터3	바-3	사-3	292	감)225	67	-	-	-	
	휴게쉼터4	바-4	사-4	74	증)42.5	116.5	-	-	-	
	휴게쉼터5	바-5	사-5	184	감)169	15	-	-	-	
	휴게쉼터6	바-6	사-6	131	감)35	96	-	-	-	
	휴게쉼터7	바-7	사-7	408	증)127	535	-	-	-	
	휴게쉼터8	바-8	사-8	153	증)10.5	163.5	-	-	-	
	휴게쉼터9	바-9	사-9	277	증)74	351	-	-	-	
	휴게쉼터10	바-10	사-10	64	증)37	101	-	-	-	
	휴게쉼터11	바-11	사-11	76	증)133	209	-	-	-	
	휴게쉼터12	바-12	-	186	감)186	-	-	-	-	삭제
	아외스텐드	④	①	-	-	-	-	-	-	
	잔디스텐드	⑥	②	-	-	-	-	-	-	
	휴게스텐드	⑦	③	-	-	-	-	-	-	
	파고라	⑩	④	-	-	-	-	-	-	
	벤치	⑧	⑤	-	-	-	-	-	-	

	평상	-	⑥	-	-	-	-	-	-	
	아외테이블	㉑	⑦	-	-	-	-	-	-	
	원형플랜터	㉒	⑧	-	-	-	-	-	-	
	휴게스텐드2	⑨	-	-	-	-	-	-	-	삭제
	휴게스텐드3	⑪	-	-	-	-	-	-	-	삭제
	조형가벽	⑫	-	-	-	-	-	-	-	삭제
	휴게스텐드4	⑬	-	-	-	-	-	-	-	삭제
	조형앉음벽	⑭	-	-	-	-	-	-	-	삭제
	휴게스텐드5	⑮	-	-	-	-	-	-	-	삭제
	휴게스텐드6	⑯	-	-	-	-	-	-	-	삭제
	휴게스텐드7	⑰	-	-	-	-	-	-	-	삭제
유화 시설	소 계			957	증)456	1,413	-	-	-	
	키즈파크1	사-1	아-1	438	증)627	1,065	-	-	-	
	키즈파크2	사-2	아-2	519	감)171	348	-	-	-	
	조합놀이대	-	⑨	-	-	-	-	-	-	
	지형놀이대	⑱	-	-	-	-	-	-	-	삭제
	그물놀이대	⑲	⑩	-	-	-	-	-	-	
	단위놀이시설	-	⑪	-	-	-	-	-	-	
운동 시설	소 계			1,457	감)239.5	1,217.5	-	-	-	
	게이트볼장	-	자	-	증)913.5	913.5	-	-	-	
	농구장	라	-	580	감)580	-	-	-	-	삭제
	축구장	마	-	521	감)521	-	-	-	-	삭제
	생활운동마당1	바-1	차-1	230	감)52	178	-	-	-	
	생활운동마당2	바-2	차-2	126	-	126	-	-	-	
	체력단련시설	㉐	⑫	-	-	-	-	-	-	
교양 시설	소 계			3,219	감)2,001	1,218	-	증)124.2	124.2	
	독서실	카	카-1	1,553	감)779	774	-	-	-	
	숲속작은도서관	㉓	카-2		증)142	142	-	증)124.2	124.2	
	청소년문화공연장1	타-1		1,370	감)1,370	-	-	-	-	삭제
	청소년문화공연장2	타-2	타-1	296	증)6	302	-	-	-	
	독서스탠드	㉔	⑬	-	-	-	-	-	-	
	스탠드2	㉕	⑭	-	-	-	-	-	-	
	스탠드3	㉖	-	-	-	-	-	-	-	삭제
	추모의벽	-	⑮	-	-	-	-	-	-	
편의 시설	소 계			2,273	감)161	2,112	-	증)23.5	23.5	
		파	파	1,570	증)136	1,706	-	-	-	
		하-1	-	95	감)95	-	-	-	-	삭제
		하-2	-	77	감)77	-	-	-	-	삭제
		하-3	-	96	감)96	-	-	-	-	삭제
		하-4	-	195	감)195	-	-	-	-	삭제
		하-5	-	14	감)14	-	-	-	-	삭제
		-	하	-	증)218	218	-	-	-	
	전망대	거	거	226	감)78	148	-	-	-	
	화장실	㉗	너	-	증)40	40	-	증)23.5	23.5	
	장애인용승강기	-	⑯	-	-	-	-	-	-	
	음수대	⑮	⑰	-	-	-	-	-	-	
	자전거보관대	-	⑱	-	-	-	-	-	-	
	침묵계단	㉘	⑲	-	-	-	-	-	-	
관리 시설	소계			226	증)32	258	201	증)34.9	235.9	

	관리사무소및화장실	너	더	226	증)14	240	201	증)16.9	217.9	
	창 고	—	러		증)18	18	—	증)18	18	
	안내판	㉘	㉙							
	녹지및기타 소계	—	—	110,524	증)2190.5	112,714.5	—	—	—	
	녹지 및 기타	—	—	67,479	증)2,190.5	69,669.5	—	—	—	
	비공원시설	—	—	43,045	—	43,045	—	—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속초시 노학동 1-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15호선	B=10m, L=309m	B=10m, L=30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속초시장(건설과)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법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1-1	노학동	1141	창	499	13	-	13	김*래	강원특별자치도 교동 961 속초청초대우아파트 103동 ****호	관계인
1-2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주 소	
2-1	"	1130-2	대	153	6	-	6	주식회사**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7*	관계인
2-2								오**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 8층	
3	"	1140	도	1,128	125	-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	"	1077-4	잡	115	1	-	1	김*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8, 102동 ****호	
5	"	1077-1	잡	142	1	-	1	국	기획재정부	
6	"	1077-2	구	51	49	-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7	"	1251-8	구	6,152	114	-	114	국	국토해양부	
8	"	1250	도	381	48	-	48	국	국토교통부	
9	"	3-19	대	496	164	6	170	김*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	
10	"	3-27	전	5,454	443	58	501	김*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	
11	"	3-22	대	1,080	165	13	178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산8-*	
12-1	"	산8-5	임	2,723	369	199	568	김*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2동 ***호	관계인
								김*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8길 8, ***호	
12-2								하나***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	
13	"	산8-2	임	694	243	152	395	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0동 ***호	
14	"	2-5	학	19,318	316	43	35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5	"	산7-21	임	9,287	750	193	943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동명동 530-*	
16	"	산7-8	임	384	142	7	149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동명동 530-*	
17	"	1-43	임	1,490	149	-	149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동명동 530-*	
18	"	1-42	도	2,547	9	-	9	속초시	속초시	
계				52,094	3,107	671	3,778			

■ 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 명 또는 명칭	주 소	
1	노학동	3-19	부속건물	컨테이너, 3.5 × 2.4	8.4㎡	김*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	
			부속건물	창고(목조), 4.6 × 3.2	14.72㎡			
			부속건물	컨테이너, 1.6 × 2.8	4.48㎡			
			부속건물	컨테이너, 4.0 × 2.4	9.6㎡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3.0 × 3.0	9㎡			
			부속건물	컨테이너, 3.0 × 6.0	18㎡			
			케노피	1.2 × 1.0	1.2㎡			
			부속건물	창고(천막구조), 5.6 × 3.1	17.36㎡			
			부속건물	창고(조립식판넬), 3.0 × 4.0	12㎡			
			부속건물	사무실(조립식판넬), 4.9 × 8.5	41.65㎡			
2	"	3-27	부속건물	창고(목조), 1.8 × 2.4	4.32㎡	김*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	
			부속건물	창고(컨테이너), 1.7 x 3.2	5.44㎡			
			부속건물	닭장(목조), 1.5 x 5.8 + 3.0 x 1.0 + 0.4 x 1.8	12.4㎡			
			부속건물	창고(컨테이너), 1.7 x 3.1	5.27㎡			
3	"	3-22	건축물	합석지붕/시멘트벽돌구조 9.3 × 5.5	51.15㎡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산8-*	
			건축물	합석지붕/시멘트벽돌구조 5.8 x 8.4 + 2.0 x 3.8+ 1.6 x 1.7 + (5.65 + 8.4) x 3.6 / 2	125.11㎡			
			감나무	R30	1주			
			소나무	R35	3주			
			웬스	메쉬웬스, H=1.5	14m			
			대문	메쉬웬스대문, B3.2 × H1.5	1주			
4	"	산8-5	부속건물	창고, 3.0 × 6.0	18㎡	김*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2동 ***호	
						김*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8길 8, ***호	
			복숭아나무		5주	하나***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	관계인
5	"	산8-2	자두나무	R10	1주	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0동 ***호	
			매실나무	R10	4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 명 또는 명칭	주 소	
6	"	2-5	벗나무	R12	7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R10	13주			
				R5	11주			
				R3	16주			
				R2	2주			
			주문	R10	1주			
7	"	산7-21	울타리	PE망, H=1.2m	11.41m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동 530-*	
8	"		향나무	R30	1주	김*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동 530-*	
				H=1.0m	1주			
				H=1.7m	1주			
			은행나무	R22	1주			
			벗나무	R5	1주			
			소나무	R25	3주			
			오동나무	R10	1주			
			울타리	H=1.2m	6.89m			
			대문	철재대문, B3.2 × H1.8	1EA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3호에 따라 속초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속 초 시 장

1. 시행일시 : 2023년 7월 10일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속초시 전 지역
3. 적용대상 :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
4. 택시 운임·요금 변경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2km이하)		3,800원	현행과 동일
거리운임 (2km초과~4km이하)		133m당 100원	
시간운임 (15km/h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	
할증 운임	복합할증 (4km 초과 시)	133m당 200원	
	심야 (00시~04시)	20%	
호출 이용료(1회당)		1,000원	· 04시~22시 : 무료 · 22시~04시 : 1,000원

5. 기타 문의 : 속초시청 교통과(033-639-2366)

속초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항제9호에 따른 속초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속 초 시 장

1. 시행일시 : 2023년 7월 10일 00:00 부터
2. 적용대상 : 속초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	-----------	-------------------

콜 운 영	□ 준수사항 ○ 브랜드콜택시 회원 및 회원소속 운전기사는 브랜드 콜센터에서 지정 배차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배차에 불응한 경우 승차거부로 간주한다. □위반시 조치(승차거부 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더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20만원
친 절 운 행 이 행	□ 준수사항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수종사자는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 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지시사항 문서로 기록 관리) □위반시 조치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 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더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운송사업자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또는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4. 기타 문의 : 속초시청 교통과(033-639-236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6. 26.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06. 28. ~ 2023. 07. 12.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3.06.23.)	고상○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6	건축물 부존재	동명동 46	목조/ 주택 19.4㎡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소로1-1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1-15호선) 개설공사
-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다.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1-42번지 일원
- 라. 사업면적 : 3,107㎡
- 마. 사업기간 : 2023. 8. 1. ~ 2024. 12. 31.
-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2. 보상대상

- 가. 토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학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6. 28. ~ 2023. 7. 14.
-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과(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내역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소로1-15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내역

구 분	소 재 지	편 입 지 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141, 1130-2, 1177-4, 3-19, 3-27, 3-22, 산8-5, 산8-2, 산7-21, 산7-8, 1-43
물건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이 의 신 청 서

1.제 목	도시계획도로(소로1-15호선) 개설공사	
2.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비 고
	시	동			지적	편입		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2,094	3,107	671	3,778							
1	속초	노학	1141	창	499	13	-	13		김순래	교동 961 속초청초대우아파트 103동 1102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2	〃	〃	1130-2	대	153	6	-	6		주식회사대명주택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75(노학동)	오비맥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8층(삼성동, 아셈타워)	근저당권	
3	〃	〃	1140	도	1,128	125	-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	〃	〃	1077-4	잡	115	1	-	1		김순래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8, 102동 3002호				
5	〃	〃	1077-1	잡	142	1	-	1		국	기획재정부				
6	〃	〃	1077-2	구	51	49	-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7	〃	〃	1251-8	구	6,152	114	-	114		국	국토교통부				
8	〃	〃	1250	도	381	48	-	48		국	국토교통부				
9	〃	〃	3-19	대	496	164	6	170		김홍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2-3				
10	〃	〃	3-27	전	5,454	443	58	501		김홍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2-3				
11	〃	〃	3-22	대	1,080	165	13	178		김영수	산8-3				
12	〃	〃	산8-5	임	2,723	369	199	568		김남숙 외 1인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2동 702호	하나새마을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0(삼도일동)	근저당권 지상권	
13	〃	〃	산8-2	임	694	243	152	395		김완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0동 402호				
14	〃	〃	2-5	학	19,318	316	43	359		공	강원도(교육감)				
15	〃	〃	산7-21	임	9,287	750	193	943		김일수	동명동 530-1				
16	〃	〃	산7-8	임	384	142	7	149		김일수	동명동 530-1				
17	〃	〃	1-43	임	1,490	149	-	149		김일수	동명동 530-1				
18	〃	〃	1-42	도	2,547	9	-	9		공	속초시				

○ 편입지장물 현황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노학동	3-19	부속건물	컨테이너, 3.5 × 2.4	8.40	m ²	김홍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2-3				
			부속건물	창고(목조), 4.6 × 3.2	14.72	m ²						
			부속건물	컨테이너, 1.6 × 2.8	4.48	m ²						
			부속건물	컨테이너, 4.0 × 2.4	9.60	m ²						
			부속건물	조립식판넬, 3.0 × 3.0	9.00	m ²						
			부속건물	컨테이너, 3.0 × 6.0	18.00	m ²						
			케노피	1.2 × 1.0	1.20	m ²						
			부속건물	창고(천막구조), 5.6 × 3.1	17.36	m ²						
			부속건물	창고(조립식판넬), 3.0 × 4.0	12.00	m ²						
			부속건물	사무실(조립식판넬), 4.9 × 8.5	41.65	m ²						
2	노학동	3-27	부속건물	창고(목조), 1.8 × 2.4	4.32	m ²	김홍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2-3				
			부속건물	창고(컨테이너), 1.7 x 3.2	5.44	m ²						
			부속건물	닭장(목조), 1.5 x 5.8 + 3.0 x 1.0 + 0.4 x 1.8	12.4	m ²						
			부속건물	창고(컨테이너), 1.7 x 3.1	5.27	m ²						

○ 편입지장물 현황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3	노학동	3-22	건축물	함석지붕/시멘트벽돌구조 9.3 × 5.5	51.15	㎡	김영수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8-3				
			건축물	함석지붕/시멘트벽돌구조 5.8 x 8.4 + 2.0 x 3.8+ 1.6 x 1.7 + (5.65 + 8.4) x 3.6 / 2	125.11	㎡						
			감나무	R30	1	주						
			소나무	R35	3	주						
			웬스	메쉬웬스, H=1.5	14.00	m						
			대문	메쉬웬스대문, B3.2 × H1.5	1	EA						
4	노학동	산8-5	부속건물	창고, 3.0 × 6.0	18.00	㎡	김남숙 외 1인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2동 702호	하나새마을 금고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서사로 40(삼도일동)	근저당권 지상권	
			복숭아나무		5	주						
5	노학동	산8-2	자두나무	R10	1	주	김완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0동 402호				
			매실나무	R10	4	주						
6	노학동	2-5	벗나무	R12	7	주	공	강원도(교육감)				
				R10	13	주						
				R5	11	주						
				R3	16	주						
				R2	2	주						
			주목	R10	1	주						

○ 편입지장물 현황 (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노학동	산7-21	울타리	PE망, H=1.2m	11.41	m	김일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0-1				
8	노학동	1-43	향나무	R30	1	주	김일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0-1				
				H=1.0m	1	주						
				H=1.7m	1	주						
			은행나무	R22	1	주						
			벚나무	R5	1	주						
			소나무	R25	3	주						
			오동나무	R10	1	주						
			울타리	H=1.2m	6.89	m						
			대문	철제대문, B3.2 × H1.8	1	EA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가 홍보대사 선정 시에만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esera@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중앙동)

3) 팩스 : 033-639-2799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시정디자인팀(전화 : 033-639-1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u>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u> ⑤ ~ ⑦ (생 략)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 할 때마다 구성 ·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 으로 본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조례명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